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조웅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권익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운영 규정과 중재신청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